

운 영 규 정

제정 : 2012년 11월 24일
1차 개정 : 2014년 3월 8일
2차 개정 : 2015년 3월 7일
3차 개정 : 2016년 3월 12일
4차 개정 : 2017년 3월 11일
5차 개정 : 2018년 3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농아청년 상호간의 연대와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문화적 참여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규정)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세부규정을 둔다.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규정심의위원회
- 제5장 총회
- 제6장 문서관리
- 제7장 재원
-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9장 본회와의 관계
- 제10장 국제교류
- 제11장 후원회
- 제12장 보칙

제3조(명칭) 본회는 한국농아청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YOUTH (약칭 KADY)라 칭한다.

1. 한국농아청년회(약칭 : 한농청)
2. 서울농아청년회(약칭 : 서울농청)
3. 부산농아청년회(약칭 : 부산농청)
4. 대구농아청년회(약칭 : 대구농청)
5. 인천농아청년회(약칭 : 인천농청)

제2장 회원

6. 광주농아청년회(약칭 : 광주농청)
7. 대전농아청년회(약칭 : 대전농청)
8. 경기농아청년회(약칭 : 경기농청)
9. 강원농아청년회(약칭 : 강원농청)
10. 충남농아청년회(약칭 : 충남농청)
11. 전북농아청년회(약칭 : 전북농청)
12. 경북농아청년회(약칭 : 경북농청)
13. 경남농아청년회(약칭 : 경남농청)
14. 제주농아청년회(약칭 : 제주농청)

제4조(소재지) 본회의 주 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한국농아인협회에 사무실을 두고 지방에 시·도 조직기구를 둘 수 있다.

1. 한국농아청년회 : 한국농아인협회
2. 서울농아청년회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3. 부산농아청년회 : 부산광역시농아인협회
4. 대구농아청년회 :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5. 인천농아청년회 :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6. 광주농아청년회 :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7. 대전농아청년회 :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
8. 경기농아청년회 : 경기도농아인협회
9. 강원농아청년회 : 강원도농아인협회
10. 충남농아청년회 : 충청남도농아인협회
11. 전북농아청년회 : 전라북도농아인협회
12. 경북농아청년회 : 경상북도농아인협회
13. 경남농아청년회 : 경상남도농아인협회
14. 제주농아청년회 :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아청년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에 필요한 사업
2. 농아청년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농아청년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사업
4. 시·도 청년회와 긴밀한 연대교류 지원 사업
5. 국제농아청년과의 국제교류 사업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조(회원의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시·도 청년회에 가입한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시·도 청년회에 가입한 준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4. 특별회원은 정회원 활동 경력이 있으며 청년회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심의, 인준으로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단, 시·도 청년회 재량으로 한다.

제7조(정회원의 자격) 시·도청년회에 가입한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로 한다. 단, 시·도청년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8조(준회원의 자격) 시·도청년회에 가입한 만 36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시·도청년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1.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회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2. 유효기간은 당해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3. 해당 시·도청년회를 탈퇴할 경우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비 운영)

1. 본회에 가입 시 시·도청년회에 가입비 및 연회비를 회계연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입비 일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시·도청년회의 재량으로 한다.
3. 회비 납부시점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원

4. 자격이 갱신된다.
 4. 회비 등은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원관리)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가입신청서(한농청 소정양식)
 - 2) 탈퇴신청서(한농청 소정양식)
 - 3) 회원명부(한농청 소정양식)
 -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한농청 소정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영구보존하되 회원의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2. 시·도 청년회는 회원관리를 하여야 하고, 매년 본회에 연간회비 납부실적현황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해지되며 모든 권한 및 관계가 상실된다.

1. 본회를 탈퇴한 자
2.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

제14조(포상) 본회 및 시·도 청년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본회 및 시·도 청년회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경고, 근신, 제명을 하여야 한다.

1. 본회 및 시·도 청년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조직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자에게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회는 견책, 자격 정지 등 징계를 하여야 한다.
2. 견책, 자격정지를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제명할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최종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절 이사회

제16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총무이사 : 1인
4. 시·도 이사 : 17인 이내
5. 분과이사 : 10인 이내 (단, 필요할 경우 회장단의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다.)
6. 감사 : 2인

제17조(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 전에 출마하여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 총무이사는 신임 회장 및 부회장이 지명한다.
3. 시·도 청년회장은 해당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본회 회장단 선출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 이사 경력 2년 이상 및 이사 회비 2년 이상 납부의무를 준수한 자
 - 2) 해당 시·도 청년회 정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
 - 3) 해당 시·도 청년회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
 - 4) 해당 시·도 청년회 연회비를 해당연도 내에 2년 이상 납부의무를 준수한 자
 - 5) 18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인 자
5. 본회 분과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 시·도 청년회 정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
 - 2) 해당 시·도 청년회 임원경력 2년 이상인 자
 - 3) 해당 시·도 청년회 연회비 2년 이상 납부의무를 준수한 자
 - 4) 지원자가 없을 경우 회장단의 지명으로 한다.

제18조(임기)

1. 본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 : 2년

- 2) 부회장 : 2년
 - 3) 총무이사 : 2년
 - 4) 사·도 이사 : 2년
 - 5) 분과 이사 : 2년
 - 6) 감사 : 2년
2. 결원으로 인해 보궐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무)

-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2. 이사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토의 의결하며 그 집행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한다.
- 3. 분과 이사
 - 1) 서기이사는 회의록을 기록 및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2) 재정이사는 본회의 모든 재정 업무들을 관장한다.
 - 3) 기획이사는 본회의 모든 행사 업무들을 관장한다.
 - 4) 홍보이사는 본회의 모든 홍보 업무들을 관장한다.
 - 5) 국제이사는 본회의 모든 국제 업무들을 관장한다.
 - 6) 교육이사는 본회의 모든 교육 업무들을 관장한다.
 - 7) 편집이사는 본회의 모든 영상 업무들을 관장한다.
- 4. 회장단 및 분과 이사는 시·도농아청년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문제가 발생함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감사는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5)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보존하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대우) 본회 이사회는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21조(고문) 전직 회장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제22조(자문)

- 1. 본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협조할 수 있다.
- 3.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의결을 하여 위촉한다.
- 4. 본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사실이 인정되는 구 이사는 자문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30일 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2. 재정 운영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모든 사항
- 4. 시·도 및 시군구 청년회 설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익보호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6. 상벌에 관한 사항
- 7. 본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2.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 3. 시·도 청년회 회장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회의 회의록)

1. 이사회에서 다루어진 회의내용은 회의록으로, 촬영 녹화물은 영상파일로 저장매체에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의 후 2주내에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사들에게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절 시·도청년회 임원회

제27조(구성) 시·도 청년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1인
 - 3) 총무 : 1인
 - 4) 임원 : 약간 명
 - 5) 감사 : 2인 이내
2. 결원으로 인해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선출)

1. 회장은 총회 전에 출마하여 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 부회장은 신임 회장이 지명한다.
3. 총무는 신임회장 및 부회장이 지명한다.
4. 시·도 청년회장은 해당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시·도 청년회 회장단 선출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시·도 청년회 임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 2) 시·도 청년회 정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
 - 3) 시·도 청년회 연회비 1년 이상 납부의무를 준수한 자
 - 4) 시·도청년회 신임 회장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6. 시·도 청년회 임원회 구성은 해당 시·도 청년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29조(임기)

1. 시·도 청년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시·도 청년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는 본회 총회까지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다.

제30조(임무)

1. 회장은 시·도 청년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임원은 시·도 청년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담에 참여한다.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시·도 청년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문제가 발생함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감사는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5)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보존하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6.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퇴할 경우 보고 및 인수인계 30일 이내로 한다.

제31조(고문) 전직 회장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제32조(자문)

1. 시·도 청년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시·도 청년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협조할 수 있다.
3. 청년회 임원으로 2년 이상 활동사실이 인정되는 구 임원은 자문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3조(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임원회의 성립)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참가로 성립된다.

제35조(임원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사항
2. 회원의 권익보호 및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재정 운영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규정심의위원회

제36조(운영방향)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 회의 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이사회 및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시도농아청년회에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되는 규정을 신설, 개정, 삭제 등의 방향을 심의, 의결한다.

제37조(직무관장)

1. 위원회의 직무는 본회 이사회가 관장한다.
2. 위원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 이사회 경력 4년 이상인 자
 - 2) 명예 회원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조직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 중에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이사 및 전문가를 추천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39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절 본회

제40조(총회의 구분 및 구성)

1.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1조(총회의 소집)

1.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한국농아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에 회

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30일 전에 시도청년회를 통하여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제44조(대의원의 구분 등)

1. 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2. 대의원은 당연직과 자동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3. 당연직 대의원은 본회 회장단 및 분과 이사 및 시도 청년회장으로 하고, 자동직 대의원은 시도 청년회 부회장 및 총무로 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시도 청년회 해당총회에서 정회원으로 한다.
4. 당연직 및 자동직 대의원의 임기는 중앙대의원 임기까지로 한다.

제45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금지)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인을 참가시킬 수 없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정족수에 산입하되 의결권, 선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6조(총회의 기록보존) 총회에서 다루어진 회의내용은 회의록 양식에 맞게 기록하며, 촬영한 녹화물은 영상파일로 저장매체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시·도청년회

제47조(총회의 구분 및 구성)

1.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8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1월~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총회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총회의 목적과 안건, 일시와 장소 등이 회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49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회원 1/2의 참가로 성립되지만 그 정회원은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불참정 회원을 포함한다.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회 및 회원 1/2 이상이 제안한 사항
5.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제51조(대의원의 배정 및 구분) 대의원은 당연직 및 자동직,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 시·도 청년회의 당연직 대의원은 시·도 청년회장으로 한다.
2. 시·도 청년회의 자동직 대의원은 시·도 청년회 부회장 및 총무 2명으로 한다.
3. 시·도 청년회의 선출직 대의원은 시·도 청년회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4. 임기 말의 총회 시, 새로 선출된 시·도 청년회 회장단은 총회 참관인으로 참가한다. 단,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제52조(대의원의 선출 등)

1. 시·도 청년회 선출직 대의원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정회원에서 선출한

다.

- 1) 선출직 대의원 정수는 3명으로 한다.
 - 2) 선출직 대의원은 각 시·도 청년회 3명을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3) 해당대의원 등록인원 미달 시에는 대의원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추천권은 선출된 대의원들이 해당 선관위 입회 하에서 행사한다.
2.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감사는 해당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대의원의 임기) 당연직 및 자동직 대의원의 임기는 중앙대의원 임기까지,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4조(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본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가하며 의결권, 선거권 등을 행사한다.

제55조(총회의 기록보존) 총회에서 다루어진 회의내용은 회의록 양식에 맞게 기록하며, 촬영한 녹화물은 영상파일로 저장매체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문서관리

제56조(문서의 보존기간)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와 관련된 문서 및 기타 후대 관심사가 될 만한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제7장 재원

제57조(재정의 구분 및 관리)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지원금
3.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차기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개시 20일 이전에 이를 편성함으로 본회 이사회 및 시·도청년회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사업실적 및 결산)

1.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0일 내에 감사를 필할 수 있도록 완료하여야 하며, 그 직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뒤 본회 이사회 또는 시·도청년회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회계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6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1조(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3명의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본회 이사회 및 시·도 청년회에서 추천을 받아 호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가 종결 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5. 본회 및 시·도 청년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집행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63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선거결과 발표
2. 선거인 명부 검토
3. 투개표 관리
4. 선거록 작성 및 보고
5.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64조(의결정족수)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표결 시 가부동수는 부결 처리한다.

제65조(경비부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본회 및 시·도청년회 예산으로 전액 충당한다.

제2절 입후보

제66조(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일은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선거공고기간과 후보 등록기간은 2주일로 한다.

제67조(등록)

1. 입후보하는 후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후보등록 신청서(선관위 소정양식) 1부
 - 2) 임원 경력증명서 1부
 - 3) 시·도 청년회 회비납부증명서(2년간) 1부
 - 4) 이사회비(임원회비)납부증명서(1년간) 1부
 -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회 소정양식)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영구보존하되 회원의 요청에 따라 폐기처분할 수 있다.)
 - 6)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호는 입후보등록 순으로 한다.

제68조(재등록)

1.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주일 이내에 재등록 공고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천하여 의결 하도록 한다.

제69조(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투표와 개표

제70조(투표소)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71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공지한 시간으로 한다.

제72조(투표용지 등)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등록순서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73조(기표방법)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지지하는 후보자 기표란에 무기명 비밀 기표를 하고,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자동 당선된다.

제74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시한다.

제75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투표지
2. 이중으로 기표된 투표지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투표지
4.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는 투표지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결정한 투표지

제76조(선거록 작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선거록에는 대의원 수, 투표자 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3. 선거록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7조(당선 결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 공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4절 이의신청

제78조(이의제기)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선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재선거)

1.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 무효로 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본회와의 관계

제80조(시·도 청년회 설립) 본회는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40조과 제규정집 제2장 직제규정 제1조, 제6조에 의거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청년회 미설립지역에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제81조(시·도청년회 설립허가)

1. 시·도 청년회는 10인 이상의 회원(발기인)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해당 시·도 협회에 설립허가를 요청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다.

2. 설립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립허가서(시·도농아인협회) 1부
 - 2) 준비위원회 구성 명단 1부
 - 3) 발기인총회 동의서(10인 이상) 1부
 - 4) 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제82조(의무 등)

1.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시·도청년회는 본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도청년회에 등록된 회원 수에 3천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총회 개최 전까지에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각 시·도 청년회에서 내부적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본회에 요청하여 해결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시·도청년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 등)

1.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본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업보고서
 - 2) 결산서
 - 3) 사업계획서
 - 4) 예산서

제10장 국제교류

제84조(국제단체 임원의 자격) 본회와 관련된 국제단체(WFDYS, ADYS)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본회 이사회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2) 국제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자
- 3) 국제단체 및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 아는 자

제85조(국제행사 대표 파견) 본회와 관련된 국제행사에 파견하는 대표는 이사회에서 추천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1. 세계/아시아농아청년대표자 회의에 대표로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회장 1인과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1인으로 구성해 2인이 참석한다.
- 2) 국제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자
- 3) 국제단체 및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 아는 자

2. 세계농아청년/청소년/유소년캠프 리더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세계농아캠프 리더는 1회만 참석이 가능하다.

- 1) 세계농아청년캠프, 아시아농아청년캠프, 세계/아시아농아청년대표자 회의에 파견되었던 자
- 2) 국제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자
- 3) 국제단체 및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 아는 자

3. 아시아농아청년캠프 리더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국제수화를 구사할 줄 아는 자
- 2) 국제단체 및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 아는 자

제86조(국제교류 대상)

1. 본회는 국제단체(WFDYS, ADYS) 및 각 국 청년회와 교류하여야 한다.
2. 시·도 청년회는 각 국 시·도 청년회와 교류하여야 한다.
3. 각 국 지역청년회와 교류시 본회에 보고하여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87조(국제 강사 섭외) 국제 강사 섭외시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88조(결과보고) 본회와 관련된 국제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촬영한 녹화물은 영상파일로 저장매체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장 후원회

제89조(후원회)

1. 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회는 후원회장 및 후원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사업을 지원한다.

제12장 보칙

제90조(운영규정 개정) 본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년에 한 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한국농아인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시·도 청년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도농아인협회 및 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2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한국농아인협회에 귀속된다. 또, 시·도 청년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시·도농아인협회에 귀속된다.

제93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아인협회 정관과 제규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94조(규정 개정 및 시행)

1.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5조(시행일)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8일 개정, 시행한다.
3.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7일 개정, 시행한다.
4.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5.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6. (개정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일 개정, 시행한다.